

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09.12.31>

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(제3조제2항 관련)

위 치	항 만 명	수 역
전라남도	노화도항	북위 34도14분03초·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 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,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 단 북위 34도14분07초·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·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 레로 이은 선 안의 해면